

의안번호	2205664
의 퇴 인	김선교의원
회 답 일	2024. 12. 10.
추계번호	24B4950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산림청장이 산림치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억원, 2030년 1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0억원(연평균 2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산림치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제1항)	100	—	—	—	—	100	20
기초조사 등 (안 제7조제1항)	500	100	100	100	100	900	180
추가재정소요	600	100	100	100	100	1,000	200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 산림청에 따르면 제정안은 현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치유 제공 기반에서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림치유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별도 법률인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목적)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참고자료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제정안 비교
- 현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치유 관련 조문을 승계한 조문을 제외한 나머지 재정수반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산림치유서비스와 산림치유산업의 진흥</u> 등을 통하여 국민들이 산림치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u>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u> 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산림치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u>산림치유 기본계획</u>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u>5년마다 수립·시행</u>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u>5년마다 지역산림치유계획</u> (이하 “지역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제7항)	재량규정
3	안 제6조(산림치유 시행계획의 수립 등)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u>연도별 산림치유 시행계획</u> (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u>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u>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기초조사 등)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u>산림치유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산림치유시설의 조성, 산림치유산업 등 실태</u> 에 관한 <u>기초조사</u> 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산림청장은 산림치유 활성화, 산림치유산업 육성 및 산림치유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u> 할 수 있음(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산림치유 관계 기관, 산림치유시설 운영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u>산림치유지역협의회</u> 를 <u>구성·운영</u>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9조(산림치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산림청장은 산림치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산림치유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u>산림치유정보체계를 구축·운영</u> 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u>산림치유정보체계</u>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산림치유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계획 등 기본체계 2. 산림치유시설의 조성·운영 현황과 산림치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 3. 산림치유사 등 관계 전문가의 현황과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정보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의 성과 5. 산림치유 창업 관련 데이터와 창업 지원 정보 6. 그 밖에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안 제10조(산림치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산림청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치유서비스를 위하여 <u>산림치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제1항)</u>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u>산림치유 관련 정보</u>를 수집·분석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u>정보처리 전산시스템</u>을 구축·운영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11조(산림치유 산업의 육성)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u>추진</u>할 수 있음(제1항) 1. 산림치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관련 제도 개선 2. 산림치유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홍보 3. 산림치유 관련 국내외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4. 산림치유업 및 연관기업의 발굴·육성 5. 그 밖에 산림치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산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u>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를 지원</u>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12조(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등)	산림청장은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림치유산업 진흥을 위하여 <u>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등을 추진</u>하여야 함(제1항) 산림청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u>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u>을 할 수 있음(제2항)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u>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u>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u>시범사업</u>을 추진할 수 있음(제3항)	의무·재량 규정
10	안 제13조(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와 관련한 <u>창업 및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사업화</u>를 촉진하기 위하여 <u>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u>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1	안 제15조(지역산림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립 등)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산림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u>지역산림치유지원센터</u>(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u>설립</u>하거나 산림치유에 전문성을 가진 <u>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u>할 수 있음(제1항) 시·도지사는 <u>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u>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16조(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	<u>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u>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함</u>(제1항)</u> <u>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음</u>(제3항)</u>	의무·재량 규정
13	안 제18조(치유의 숲 조성)	<u>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치유의 숲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u>(이하 “<u>치유의 숲조성계획</u>”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함.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1항)</u> <u>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u>대부등</u>”이라 함)를 받은 자(받으려는 자를 포함함)는 소유하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함)을 <u>치유의 숲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치유의 숲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u>을 받아야 함. 승인받은 치유의 숲조성계획을 <u>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u>(제2항)</u></u> <u>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의 숲조성계획에 따라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제7항)</u>	의무·재량 규정
14	안 제34조(산림치유사의 보수교육)	제29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u>산림치유사</u> 는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u>정기적으로 교육</u> 을 받아야 함. 다만, 질병·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15	안 제36조(재정지원)	<u>산림청장은 산림치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u>산림치유 관련 사업</u>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u>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u>할 수 있음(제1항)</u>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이 법에 따른 <u>산림치유 관련 사업</u>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u>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u>을 융자할 수 있음(제2항)</u>	의무·재량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서비스와 산림치유산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5조(산림치유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제1항) 기본계획 • 산림청 제출자료 참고
		×	• (제7항) 지역계획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시·도에서 산림치유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대상 지역 및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예상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안 제6조(산림치유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미대상 — 산림치유 시행계획은 산림치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4	안 제7조(기초조사 등)	○	• 산림청 제출자료 참고
5	안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	• 미대상 —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산림치유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별로 협의체를 운영중이며, 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6	안 제9조(산림치유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치유정보체계(안 제9조)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치유정보처리 전산시스템 구축(안 제10조)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운영할 계획 — 다만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ISP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산림청에 따르면 신규 ISP 수립을 위해 180백만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7	안 제10조(산림치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11조(산림치유산업의 육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치유산업을 추진하고, 산림치유산업의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9	안 제12조(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은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연구개발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사업 예산 현황: 2023~2025년(안)>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사업명</th><th>2023</th><th>2024</th><th>2025(안)</th></tr> <tr> <td>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 개발 및 확산(R&D)(1743-303)</td><td></td><td></td><td></td></tr> <tr> <td> - 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 개발 및 확산 · 치유물질인자활용기술개발 · 치유자원응용·공유기술 · 지능형 헬스케어 기반 재활운동의 임상적 효과 규명 </td><td>6,800</td><td>750</td><td>1,000</td></tr> </table>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 다만, 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의 공동연구에 따른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사업명	2023	2024	2025(안)	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 개발 및 확산(R&D)(1743-303)				- 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 개발 및 확산 · 치유물질인자활용기술개발 · 치유자원응용·공유기술 · 지능형 헬스케어 기반 재활운동의 임상적 효과 규명	6,800	750	1,000
사업명	2023	2024	2025(안)												
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 개발 및 확산(R&D)(1743-303)															
- 농림해양기반 스마트헬스케어 기술 개발 및 확산 · 치유물질인자활용기술개발 · 치유자원응용·공유기술 · 지능형 헬스케어 기반 재활운동의 임상적 효과 규명	6,800	750	1,000												
10	안 제13조(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7은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예산 현황: 2023~2025년(안)>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사업명</th><th>2023</th><th>2024</th><th>2025(안)</th></tr> <tr> <td>산림교육치유활성화 (1743-302)</td><td></td><td></td><td></td></tr> </table>	사업명	2023	2024	2025(안)	산림교육치유활성화 (1743-302)							
사업명	2023	2024	2025(안)												
산림교육치유활성화 (1743-302)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사업명	2023	2024	2025(안)
			- 산림휴양복지증진 지원 · 산림복지전문업 역량강화 (전문업 창업 및 성장 지원)	400	400	400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 다만, 제정안에 따라 산림치유와 관련한 창업 및 산림치유 관련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재정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 내용,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1	안 제15조(지역산림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립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시·도지사가 관할구역내 산림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산림치유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설립하고,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지방비)가 발생함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시도별 지역산림치유지원센터 지정, 신규 설립 여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12	안 제16조(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	—	• 미대상 - 산림청에 따르면 제정안은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산림치유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산림치유사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음 <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예산 현황: 2023~2025년(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3	2024	2025(안)
			산림복지국기본경비 (7011-254)			
			- 산림치유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프로그램 개발 보급)	20	19	19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13	안 제18조(치유의 숲 조성)	—	• 미대상 -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치유의숲 조성 지원 사업을 수행중이며, 제정안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조성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치유의숲 조성사업 예산 현황: 2023~2025년(안)> (단위: 백만원) <table> <tr> <th>사업명</th><th>2023</th><th>2024</th><th>2025(안)</th></tr> <tr> <td>산림서비스도우미 (1743-300)</td><td>38,103</td><td>37,714</td><td>36,105</td></tr> <tr> <td>- 산림치유 운영</td><td>2,402</td><td>2,402</td><td>2,258</td></tr> <tr> <td>· 국립 치유의 숲</td><td>1,056</td><td>1,056</td><td>1,056</td></tr> <tr> <td>· 공립 치유의 숲</td><td>1,346</td><td>1,346</td><td>1,202</td></tr> <tr> <td>산림교육치유활성화 (1743-302)</td><td>13,101</td><td>12,279</td><td>12,813</td></tr> <tr> <td>- 산림치유활성화</td><td>4,124</td><td>3,874</td><td>5,879</td></tr> <tr> <td>· 치유의 숲</td><td>3,650</td><td>3,100</td><td>5,305</td></tr> <tr> <td>산림사업종합자금(음자) (1588-300)</td><td>500</td><td>500</td><td>500</td></tr> <tr> <td>- 치유의 숲 등 음자 (사립 치유의 숲 시설 조성에 대한 음자)</td><td>500</td><td>500</td><td>500</td></tr> </table>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사업명	2023	2024	2025(안)	산림서비스도우미 (1743-300)	38,103	37,714	36,105	- 산림치유 운영	2,402	2,402	2,258	· 국립 치유의 숲	1,056	1,056	1,056	· 공립 치유의 숲	1,346	1,346	1,202	산림교육치유활성화 (1743-302)	13,101	12,279	12,813	- 산림치유활성화	4,124	3,874	5,879	· 치유의 숲	3,650	3,100	5,305	산림사업종합자금(음자) (1588-300)	500	500	500	- 치유의 숲 등 음자 (사립 치유의 숲 시설 조성에 대한 음자)	500	500	500
사업명	2023	2024	2025(안)																																								
산림서비스도우미 (1743-300)	38,103	37,714	36,105																																								
- 산림치유 운영	2,402	2,402	2,258																																								
· 국립 치유의 숲	1,056	1,056	1,056																																								
· 공립 치유의 숲	1,346	1,346	1,202																																								
산림교육치유활성화 (1743-302)	13,101	12,279	12,813																																								
- 산림치유활성화	4,124	3,874	5,879																																								
· 치유의 숲	3,650	3,100	5,305																																								
산림사업종합자금(음자) (1588-300)	500	500	500																																								
- 치유의 숲 등 음자 (사립 치유의 숲 시설 조성에 대한 음자)	500	500	500																																								
14	안 제34조(산림치유사의 보수교육)	—	• 미대상 - 산림청에 따르면 현행 산림복지전문가 교육 운영에 맞추고, 전문가(산림치유사)에게 보수교육 참여시 교육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계획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유사사례) 현행 산림복지전문가 교육(자부담) - 산림복지전문가 직무교육 7시간 / 65천원 - 산림복지전문가 전문교육 16시간 / 99천원																																								
15	안 제36조(재정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치유 관련 사업자에 대해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나, 현시점에서는 구체적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산림치유 사업개요

- 산림 내 다양한 산림치유자원(피톤치드, 음이온, 경관, 향기, 소리 등)을 활용하는 산림치유시설 조성·운영과 산림치유사(전문인력) 양성과 운영을 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활동과 관련 산업 육성

□ 추진경과

- 산림치유 사업은 현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05.8.4.제정)에 산림치유 사업의 법적 근거를 두고 실시중
 - － (2010. 3.17. 개정) 산림치유, 치유의 숲 제도 도입
 - － (2011. 7.14. 개정)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제도 도입
 - － (2014. 6. 3. 개정)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영역 확장(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 － (2020. 2.18. 개정)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대여·알선 등 위반 행위 및 처벌 규정 도입
 - － (2023.10.31. 개정)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 창업 지원 규정 도입
- ※ [참고자료 2] 산림치유 관련 사업 현황 참고

나. 산림치유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제1항)

- 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산림치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을 연구용역 등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산림치유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연구용역 비용은 산림청 제출자료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1억원으로 가정
 - － 이때, 산림치유 기본계획은 추계기간 첫해인 2026년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유사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공고기관	용역과제명	공고년도	공고금액
산림청	권역별 산림교육·치유시설 조성 계획 수립	2023	100
산림청	산림레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	2021	100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및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산림청장이 5년마다 산림치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억원으로 추계됨

[표 3] 산림치유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산림치유 기본계획 수립	100	—	—	—	—	100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및 조달청 나라장터 검색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기초조사 등(안 제7조)

- 제정안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치유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본 추계는 산림청 제출자료 및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실태조사 비용 산출
 - 산림청에 따르면 기초조사는 통일된 조사기준과 표준화를 위해 국가에서 일괄 조사 후 데이터화하고 관계기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
 - **(치유의 숲 현황)** 전국 83개소 운영 및 조성중
 - ('24년 기준) 55개소 운영중(국립13, 공립40, 사립2)
 - ('27년까지) 28개소 조성중(국립2, 공립24, 사립2)
 - **(조사항목)** 산림치유시설별 산림치유 자원조사와 환경조사 및 분석
 - 산림치유자원(피톤치드, 음이온, 경관, 햇빛, 공기 등)
 - 산림환경(수종, 임상, 지형, 등)
 - 운영현황(산림치유 수요, 전문인력, 수익 등) 등
 - **(조사단가)** 1개소당 10백만원 (산림청 제출자료)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조사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기초조사 대상)** 산림청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2026년에 치유의 숲 50개소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027년 이후에는 매년 10개소씩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2026년) 총 50개소
 - (2027년 이후) 매년 10개소

※ 치유의 숲은 ('24년) 55개소 → ('27년) 83개소로 향후 3년간 28개소, 즉 매년 9.3개소씩 증가 예정인 점을 고려한 것임

□ 추계 결과, 산림청장이 산림치유서비스 수요·공급, 산림치유시설 조성, 산림치유 산업 실태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9억원으로 추계됨

[표 8] 산림치유 기초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초조사 대상 수(A, 개소)	50	10	10	10	10	—
기초조사 단가(B, 백만원/개소)	10	10	10	10	10	—
기초조사 비용 (C=A×B, 백만원)	500	100	100	100	100	900

주: 기초조사 대상 수는 치유의 숲 운영 및 조성 현황을 바탕으로 가정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현행 사업 및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assembly.go.kr

[참고자료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제정안 비교

(산림청 제출자료)

<산림치유에 관한 현행법 및 제정안 비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현행)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4. 산림치유 5. 치유의 숲	제2조(정의) 1. 산림치유 2. 산림치유서비스 3. 산림치유자원 4. 산림치유시설 5. 치유의 숲 6. 산림치유사 7. 산림치유산업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산림치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산림치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산림치유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초조사 등)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산림치유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제10조(산림치유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활용)
제3장 산림치유지도사 등	제5장 산림치유사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제26조(산림치유사)
	제27조(산림치유사 결격사유)
	제28조(자격증의 발급)
	제29조(산림치유사의 업무)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제30조(산림치유사의 배치 등)
	제31조(사회서비스 등과 연계 제공)
제11조의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제32조(산림치유사 양성기관)
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정	제33조(산림치유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현행)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지)	
	제34조(산림치유사의 보수교육)
	제3장 산림치유산업의 진흥
	제11조(산림치유산업의 육성)
제11조의6(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보급 등)	제12조(산림치유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등)
제11조의7(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제13조(산림치유 관련 창업 지원 등)
	제14조(산림치유업의 등록 등)
	제15조(지역산림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립 등)
	제16조(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
	제17조(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지정취소)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등의 조성 등	제4장 치유의 숲 조성 등
제20조(산림욕장등의 조성)	제18조(치유의 숲 조성)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20조(치유의 숲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21조의2(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제21조(치유의 숲의 타당성 평가)
	제22조(치유의 숲 등록)
	제23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21조의6(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제24조(치유의 숲에서의 금지행위)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제25조(치유의 숲의 위탁)
제7장 보칙	제6장 보칙
	제3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6조(재정지원)
제31조의2(수수료)	제37조(수수료)
제33조(청문)	제38조(청문)
제34조(권한의 위임)	제3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7장 벌칙
제42조(벌칙)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제42조(과태료)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참고자료 2] 산림치유 관련 사업 현황

(산림청 제출자료)

□ 산림치유 사업개요

- 산림 내 다양한 산림치유자원(피톤치드, 음이온, 경관, 향기, 소리 등)을 활용하는 산림치유시설 조성·운영과 산림치유사(전문인력) 양성과 운영을 통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활동과 관련 산업 육성

□ 추진경과

- 현행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2005.8.4.제정)에 산림치유 사업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2010. 3.17. 개정) 산림치유, 치유의 숲 제도 도입
 - (2011. 7.14. 개정)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제도 도입
 - (2014. 6. 3. 개정) 산림치유지도사 활동영역 확장(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 (2020. 2.18. 개정)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대여·알선 등 위반 행위 및 처벌 규정 도입
 - (2023.10.31. 개정) 산림치유 연구개발 및 보급, 창업 지원 규정 도입

□ 관련 통계

- 치유의 숲 조성 운영: 전국 83개소
 - 운영 55(국립 13, 공립 40, 사립 2)
 - 조성중 28(국립 2, 공립 24, 사립 2)
- 산림치유지도사: 3,142명(1급 718명 / 2급 2,424명)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 25개 지정(1급 10개, 2급 15개)
- 산림복지전문업
 - 종합산림복지업 70개 업체(750명)
 - 산림치유업 128개 업체(276명)

□ 시행주체

- 시설 조성(국립-국가, 공립-지자체, 사립-개인)
- 위탁 운영(국가-산림복지진흥원, 공립-전문업 위탁)

□ 향후계획

- ① 생활권 치유의 숲 인프라 확대
- ② 산림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예방관리 강화
- ③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
- ④ 전문업 경영활성화 및 민간시장 확대
- ⑤ 산림치유서비스 체계적 연구 및 R&D 강화

치유의 숲 시설 조성	'24년(55개소) → '27년(83개)소
산림치유지도사	'24년(3,142명) → '27년(3,742명)
산림복지전문업 (종합산림복지업·산림치유업)	'24년(198개 업체) → '27년(288개 업체)
산림치유 장기 목표	① 산림치유 건강증진 효과에 대한 의·과학적 검증으로 신의료기술 등재 ② 사회서비스 연계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국민건강보험과 연계하고 의 료처방으로 산림치유 확립

□ 산림치유 관련 예결산 현황: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집행중)	예산
산림서비스 도우미 (1743-300)	산림치유 운영	치유의 숲의 전문 업(산림치유지도 사) 배치							
	- 국립 치유의 숲		1,012	977	1,056	1,042	1,056		1,056
	- 공립 치유의 숲		1,242	1,242	1,346	1,346	1,346	-	1,202
	소계		2,254	2,219	2,402	2,388	2,402		2,258
산림교육치 유활성화 (1743-302)	산림치유활성화							-	
	- 치유의 숲	치유의 숲 공간 조성	6,928	7,913	3,650	4,347	3,100	-	5,305
	- 산림치유 산업기 반마련							-	
	산림치유프로그 램 개발	산림치유프로그램 기획, 운영 점검 등	73	73	73	73	73	-	73
	산림치유지도사 평가	산림치유지도사 자 격시험 운영	251	251	301	301	501	-	501
	- 재난숲심리지원 매뉴얼개발	재난 대응인력 산 림치유를 위한 프 로그램 운영 절차	100	100	100	100	-	-	-
	- 산림복지전문업 역량강화	전문업 창업 및 성 장 지원	400	400	400	400	400	-	400
	소계		7,752	8,737	4,524	5,221	4,074		6,279

세부사업 (사업코드)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집행중)	예산
산림복지국 기본경비 (7011-254)	산림치유프로그램 경진대회	우수프로그램 개발 보급	20	19	20	19	19	—	19
농림해양기 반 스마트헬 스케어 기술 개발 및 확산 (R&D) (1743-303)	농림해양기반 스 마트헬스케어 기 술개발 및 확산	*치유물질인자활 용기술개발, *치유 자원응용·공유기 술 *지능형 헬스케어 기반 재활운동의 임상적 효과 규명	6,170	6,170	6,800	6,800	750	—	1,000
산림환경기 능증진자금 지원 (6642-313)	—취약계층 숲체험 교육 지원사업	전문업 등 민간대 상 취약계층 산림 복지서비스 제공사 업 지원	10,500	10,500	11,136	11,136	12,264	12,264	14,692
산림사업중 합자금(융자) (1588-300)	치유의 숲 등 융자	사립 치유의 숲 시 설 조성에 대한 융 자	500	500	500	500	500		500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